

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

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건별 기한연장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본인은 귀하와 체결한 _____년 ____월 ____일자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(이하 “원약정”이라 함)에 근거하여 취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약하며 기한연장을 요청합니다.

제 1 조 (기한연장 대상 대출)

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구매기업의 워크아웃,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매기업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하여 기일에 상환되지 않은(당일만기 포함) 건별 대출에 한하여 기한연장 할 수 있기로 하며, 이를 제외한 “원약정” 및 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에 정한 사유에 의해 대출취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한연장 할 수 없다.

제 2 조 (대출금의 이자 및 이율)

- ① 지연배상금 및 기한연장에 따른 이율은 기 제출한 “원약정” 조건에 따른다.
- ② 기한연장기간에 해당하는 할인료와 관련 지연배상금은 기한연장 실행일에 납부한다.

제 3 조 (기한연장 기간)

-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한 워크아웃의 경우 “제 1 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소집통보일”로부터 최대 130 일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할 수 있다.
- ②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의 경우 “자율협약 개시기준일”로부터 최대 130 일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할 수 있다.
- ③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에서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결의가 있는 이후에는 기한연장 신청할 수 없다.

제 4 조 (상환의무 등)

- ① 대출금의 상환의무는 “원약정” 조건에 따라 본인에게 있으며, 구매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구매기업의 워크아웃,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.
- ② 대출금의 변제기일전이라 하더라도 구매기업이 채권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한다.
- ③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변제기일전 상환시 환출되는 이자는 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.

붙임 : 건별 기한연장 요청 명세

20 년 월 일

본인(채무자) : _____(인)

주 소 :

붙임 : 건별 기한연장 요청 명세

No	대출정보					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정보				
	계좌번호	대출금액	대출취급일	대출만기일	연장 후 만기일	채권번호	구매품	채권금액	채권발행일	채권만기일
1										
2										
3										
4										
5										
6										
7										
8										
9										
10										
11										
12										
13										
14										

※ 계좌번호는 실행번호까지 기재함.